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. 23 선고 2017가단622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1. 9.

판결 선고 2018. 1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1984. 2. 14. 접수 제54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1984. 2. 14.

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5495호로 채무자 원고, 근저당권자 피고, 채권최고액 12,000,000원의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고 한다)설정등기를 마쳤다.
[인정 근거] 갑 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,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1984. 2. 14.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14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, 제2항, 제42조 제1항,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, 위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,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결정을 받고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을 때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 등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할 것이지만, 현재 수용개시결정 및 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의 실익이 있다 할 것이고,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전상범

별지